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EVFTA 협정에 따른 베트남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업데이트

2020 년 10월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배경

- 유럽연합 (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EVFTA)은 2020년08월0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후 베트남 정부는 2020년8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표 및 관련 수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제111호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제111호 시행령은 2020년9월18일부터 발효합니다.
- 본 뉴스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의 주요내용 및 실무적용에 주목할 만한 사항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 EVFTA와 관련 배경정보 및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Deloitte Vietnam의 [EVFTA협정](#), [제11/2020/TT-BCT호 시행 규칙에](#) 대한 세무뉴스 및 [웹비나](#)를 참조하십시오.

제111/2020/ND-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

- EVFTA에 따른 관세감소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의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의 적용은 3 단계로 나누어 됩니다:**
2020년08월01일 - 2020년12월31일; 2021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및 2022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EVFTA협정에 따른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을 적용에 대한 **조건 및 절차**
- EVFTA의 적용범위에 포함/제외된 **유럽 연합 (“EU”) 회원국 및 영토의 목록**
- **2020년08월01일부터 시행령의 발효날짜까지 미리 관세 신고된 재화의 경우:** 초과 납부된 수입관세를 확인한 것은 관세당국에 의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EVFTA 협정에 따른 베트남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업데이트

2020년 10월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EU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특별우대세율

시행령에 발행된 특별우대 수출관세 :

- 다음과 같은 국가로 수출할 때 EVFTA에 따른 수출관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i. EU 회원국의 영토; 및
 - ii. 영국 및 북아일랜드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함).
- 제57/2020/ND-CP호 시행령의 수출 관세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EVFTA의 수출 특별우대세율표에 제외된 재화의 경우 EVFTA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VFTA 특별우대 수출관세율 적용조건 :

- 목적지는 규정된 국가 및 영토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선적서류가 있음 (사본)
- 베트남 원산지가 있는 수출품은 EU 회원국, 영국 및 북아일랜드 (2020년12월31일까지 유효됨)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수입 관세신고서가 있음

비고: 베트남에서 수출시 MFN 수출 관세율 (가장 선호하는 국가 관세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이 적용됩니다. 수출 관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서류를 제공하므로 EVFTA 관세율이 적용하게 되면 수출자는 MFN 수출 관세율과 EVFTA 수출 관세율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된 수출 관세액에 대한 환급은 관세 당국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EVFTA 협정에 따른 베트남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업데이트

2020년 10월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EU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

관세 할당량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04.07; 17.01; 24.01; 25.01의 라인에 해당하는 관세율의 일부가 할당량 적용됨;
- 적용할 할당량내에 특별우대 수입 관세율
-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 및
- 적용할 할당량외에 수입 관세율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시행령은 **2020년09월18일부터** 발효하지만 EVFTA에 따른 특별우대 관세율은 **2020년08월01일부터 베트남관세당국에 신고된 EU 수입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비고: 2020년8월1일부터 본 시행령이 발효한 일 전까지 등록된 수입 관세 신고서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품이 EVFTA 특별우대세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EVFTA 및 MFN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수입세 환급을 처리한다.

EVFTA 특별우대 수입 관세율 적용 조건:

- 본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우대 수입 관세표에 포함한 수입품;
- EU 회원국,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DUDRNR 및 북아일랜드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2020년12월31일까지 유효됨) 베트남의 비관세 구역에서 내수로 수입된 수입품;
- "원산지"에 대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며 EV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함;

비고: EC의 제1982973호 Ares(2020) OL를 통해 발표에 따르면 EU에서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 REX 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자체 증명서 ; 또는
 - 가치가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자체 증명서
- 베트남에서 우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EUR 1호와 원산지 신고서가 EU에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